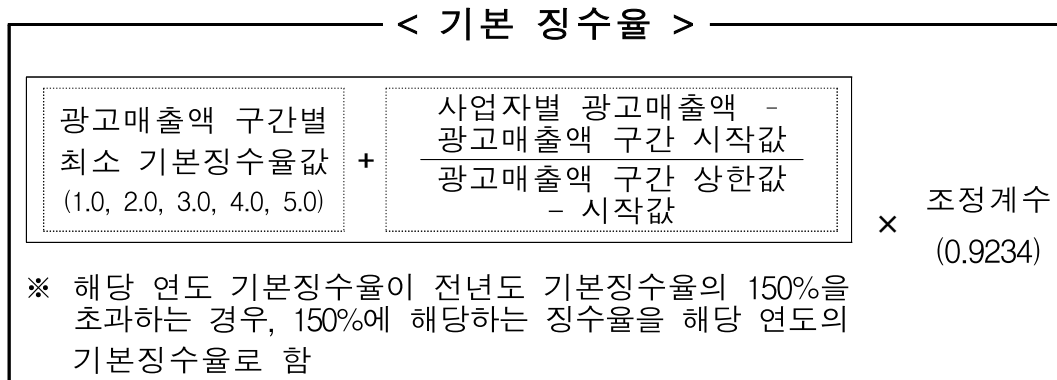


1. 방송사업자 분담금 산정 체계

1-1. 최종 징수율 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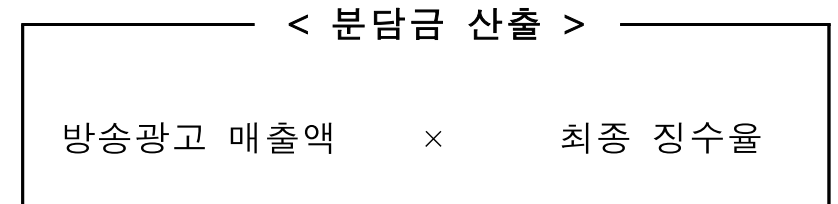
< 징수율 추가 감경 >

- KBS·EBS(공공성) : 1/3 감경
- 지역·중소지상파 : 1/3 감경
 ※ 당기순손실 발생 시 : 1/2 감경
- 종편·보도채널 : 14.23% 감경
- 중앙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 : 총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1/2 추가 감경



최종 징수율 결정

1-2. 분담금 징수금액 결정



< 면제 및 경감 >

구분	관련규정	내용
면제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1호	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이며, 당기순손실 발생 사업자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호	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
경감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3호	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분담금 경감



사업자별 최종 징수금액 결정

2.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산정 내역 등의 공개

(단위 : %, 원)

No	방송사업자명	구분	기본징수율	징수율 감경 구분	최종징수율	분담금 감면액	분담금 감면 사유	분담금 결정액
1	(주)문화방송	중앙지상파	3.871474	-	3.871474	-	-	10,583,331,120
2	(주)에스비에스	중앙지상파	3.959273		3.959273	-	-	14,211,445,240
3	한국방송공사	중앙지상파	3.932	방통위 고시 2019-10호 제5조 제1호에 따른 1/3 감경	2.62134	-	-	8,712,506,760
4	한국교육방송공사	중앙지상파	2.31	방통위 고시 2019-10호 제5조 제1호에 따른 1/3 감경 및 제5조 제4호에 따른 1/2 추가 감경	0.385	-	-	120,368,240
5	부산문화방송(주)	지역MBC	1.725	방통위 고시 2019-10호 제5조 제2호에 따른 1/2 감경	0.8625	-	-	117,342,270
6	대구문화방송(주)	지역MBC	1.725		0.8625	-	-	94,578,350
7	광주문화방송(주)	지역MBC	1.758273		0.879136	-	-	83,699,430
8	대전문화방송(주)	지역MBC	1.777915		0.888957	-	-	85,579,920
9	전주문화방송(주)	지역MBC	1.341993		0.670997	-	-	48,758,560
10	(주)엠비씨경남	지역MBC	1.919902		0.959951	-	-	126,393,320
11	춘천문화방송(주)	지역MBC	0.975		0.4875	-	-	26,991,090
12	(주)엠비씨충북	지역MBC	1.725		0.8625	-	-	100,950,070
13	제주문화방송(주)	지역MBC	0.975		0.4875	-	-	32,067,370
14	울산문화방송(주)	지역MBC	1.305086		0.652543	-	-	46,113,510
15	목포문화방송(주)	지역MBC	0.975		0.4875	-	-	26,344,190
16	여수문화방송(주)	지역MBC	0.92983		0.464915	-	-	23,407,590
17	안동문화방송(주)	지역MBC	0.968648		0.484324	-	-	25,402,840
18	포항문화방송(주)	지역MBC	0.975		0.4875	-	-	29,512,240
19	(주)엠비씨강원영동	지역MBC	1.725		0.8625	-	-	87,173,600
20	(주)청주방송	지역민방	1.370853		0.685426	-	-	50,878,200
21	(주)울산방송	지역민방	0.975		0.4875	-	-	35,298,750
22	(주)제주방송	지역민방	1.297963		0.648981	-	-	45,611,510
23	(재)기독교방송	라디오	2.154908		1.077454	48,959,499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감	202,590,060

24	원주문화방송(주)	지역MBC	0.922796		0.461398	23,054,80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제	0
25	(주)와이티엔라디오	라디오	0.294713		0.147356	2,351,513		0
26	(재)평화방송	라디오	0.45		0.225	9,540,394		0
27	(재)원음방송	라디오	0.45		0.225	6,899,911		0
28	(재)광주영어방송재단	라디오	0.019125		0.009562	9,903		0
29	한국방송공사	DMB	0.078812		0.039406	168,166		0
30	(주)문화방송	DMB	0.046761		0.02338	59,199		0
31	한국디엠비(주)	DMB	0.072404		0.036202	141,930		0
32	(주)케이엔엔	지역민방	2.109897	방통위 고시 2019-10호 제5조 제2호에 따른 1/3 감경	1.406598	-	-	300,967,980
33	(주)티비씨 방송	지역민방	1.980716		1.320477	-	-	208,648,550
34	(주)광주방송	지역민방	1.92768		1.28512	-	-	173,537,070
35	(주)대전방송	지역민방	1.871475		1.24765	-	-	138,100,720
36	(주)전주방송	지역민방	1.337631		0.891754	-	-	64,589,480
37	(주)G1	지역민방	1.830459		1.220306	-	-	120,950,860
38	(주)경인방송	라디오	0.310732		0.207154	-	-	3,485,450
39	(주)경기방송	라디오	0.423889		0.282593	-	-	6,486,240
40	(재)불교방송	라디오	1.081844		0.721229	-	-	42,249,170
41	(재)극동방송	라디오	0.338562		0.225708	-	-	4,137,750
42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라디오	0.097173		0.064782	-	-	340,860
43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라디오	0.024659		0.016439	-	-	21,950
44	(주)에스비에스	DMB	0.009326		0.006218	-	-	3,140
45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지역민방	2.05889		1.372593	246,345,09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감	17,019,200
46	(주)와이티엔디엠비	DMB	0.215973		0.143982	1,180,709		503,070
47	유원미디어(주)	DMB	0.098296		0.065531	318,065		30,720
48	(주)와이티엔	보도전문	2.25	방통위 고시 2019-10호 제5조 제3호에 따른 14.23% 감경	1.93	-	-	1,079,352,680
49	(주)제이티비씨	종합편성	2.25		1.93	4,179,877,18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감	593,496,570
50	(주)채널에이	종합편성	2.25		1.93	373,042,225		821,502,650
51	(주)매일방송	종합편성	2.25		1.93	52,103,303		1,263,383,220
52	(주)조선방송	종합편성	2.25		1.93	239,234,271		1,074,368,940
53	(주)연합뉴스티브이	보도전문	2.25		1.93	394,579,615		313,960,250

3. 근거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분담금의 면제·경감 및 가산금)

-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2015.6.22.>
1.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나.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총액 이상인 사업자 :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3.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 ② 삭제 <2013.10.30.>
-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9.>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0호) 제8조(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 징수율 감경사유,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